

2018년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8년 동네숲(골목길)가꾸기 사업
- 사업목적 : 주민이 참여하여 골목길에 꽃과 나무를 심어 골목길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내 도시녹화 공동체 형성
- 사업기간 : 2018. 3. ~ 11.
- 대상지 : 서울시내 골목길 10개소 내외

2. 공모분야

공모방법	대상지 고려사항	지원규모
대상지 및 사업 자유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은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해진 “길”을 의미함 · 적합한 대상지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곳, 차량통행은 가능하더라도 일반통행으로 차량주차가 어려운 곳,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곳 · 원칙적으로 1개길을 사업대상으로 하나 마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1개 “길”이상도 가능 ※ 관할 동 주민센터 확인 날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총액: 800백만원 · 지원금액: 개소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30백만원 - 최대 100백만원 · 지원예산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보조 : 10~30% - 자본보조 : 70~90%

※ 지원예산 종류 : 경상보조 -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 자본보조 - 시설비

※ 제외 대상지 :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

3. 신청자격 :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

- 민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주민 10인 이상의 공동체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단체"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2. 20.(화) ~ 3. 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 ▶ 접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문의
- ※ 서류보완 : 제안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 3일 이내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제출 철회로 간주

5. 신청조건

- 신청사업 수 : 1개 단체당 2개 이하 사업
- 사업금액별 지원조건
 - 1) 5천만원 이하 : 해당지역 거주 주민대표(통·반장 등) 또는 주민 3명 이상 참여
 - 2) 5천만원 초과 :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해당지역 거주 주민대표(통·반장 등) 또는 주민 3명 이상 참여
 - 관련분야 전문가 1인 이상 참여
 - 3) 전문가 조건
 - 가) 관련분야 : 조경, 원예, 정원디자인, 산림, 식물 등
 - 나) 자 격
 - (1) 관련분야 국가기관 자격증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2) 관련분야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 제외대상

- 1)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단체
- 2) 최근 3년 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3)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추진계획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중 하나
- 전문가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원본 등

7. 선정심사

<심사기준>

- ① 수행능력 : 전문성, 최근 유사사업실적 등
- ② 계획성 : 대상지 적합성, 필요성, 주민참여프로그램(8회 이상, 조경교육 2회, 유지관리교육 2회 포함) 등
- ③ 지속성 : 유지관리계획의 타당성, 유지관리의 용이성(관리저감 계획 등)
- ④ 예산계획의 타당성 :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항목책정의 구체성 등

※ 가·감점 부여

- 자부담이 보조금의 5% 이상인 경우 가점(5점)
- 사후관리 실태 점검결과 우수, 최근 2년간 '꽃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수상 단체, 서울시민 정원사 인증자(봉사실습 수료) 포함 등의 경우 가점(5점)
- 사후관리 실태 점검결과 '미흡'인 경우 3점, '불량'인 경우 5점의 감점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등)
 - 심사제외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내용심사 :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자치구 현장평가를 통한 사전검토(대상지의 적합성, 필요성, 주민참여도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사업선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조정

8. 결과발표 : '18. 3. 21.(수) 예정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 게시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와 자치구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전용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며, 보조 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보조금은 월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
- 중간실적 보고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장 수시점검)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0.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자부담이 일정 필요함.(이행보증보험료는 보조금으로 편성·집행 불가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반드시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함.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

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 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1.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서 울 시	조 경 과	2133-2107	서 대 문 구	푸른도시과	330-1754
종 로 구	공원녹지과	2148-2863	마 포 구	공원녹지과	3153-9576
중 구	공원녹지과	3396-5874	양 천 구	공원녹지과	2620-3585
용 산 구	공원녹지과	2199-7612	강 서 구	공원녹지과	2600-4191
성 동 구	공원녹지과	2286-5667	구 로 구	공원녹지과	860-2397
광 진 구	공원녹지과	450-7785	금 천 구	공원녹지과	2627-1672
동 대 문 구	공원녹지과	2127-4780	영 등 포 구	푸른도시과	2670-3766
중 랑 구	공원녹지과	2094-2374	동 작 구	공원녹지과	820-9815
성 북 구	공원녹지과	2241-3712	관 악 구	공원녹지과	879-6533
강 북 구	푸른도시과	901-6937	서 초 구	공원녹지과	2155-6846
도 봉 구	공원녹지과	2091-3772	강 남 구	공원녹지과	3423-6276
노 원 구	공원녹지과	2116-3960	송 파 구	공원녹지과	2147-3397
은 평 구	공원녹지과	351-8013	강 동 구	푸른도시과	3425-6464